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7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9.~1.15.) -

January 16,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인 관계로 차회(次回) 뉴스레터(제171호)는 1/30(월)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설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                                    | 내용   | 일시                                    |   |                                   |   |            |
|---------------------------------------|--|---------------------------------------|---|-----------------------------------|---|------------|
| 산업통상<br>자원부                           | <p>• <b>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개최, 「산업 AI 내재화 전략」 심의·확정</b></p> <p>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확정한 바, 이번에 수립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그간 정부의 AI 정책 무게중심이 일반 분야(금융·행정 등)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AI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되었던 것과 차별화하여 AI를 우리 산업에 적용(AI 내재화)하는 부분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AI 내재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①협업, ②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③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p> <p>* 철강, 자동차 등 AI를 활용하는 기업<br/>** AI 솔루션 등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p> <p>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AI 활용 기업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공급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과 폭넓게 소통해 나갈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b>&lt;비전 및 세부 추진 과제&gt;</b></p> <p>◇ (비전) <b>산업 AI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b><br/>         ◇ (목표) <b>2030년 ①AI 활용 기업 1% → 30%, ② 글로벌 산업 AI 공급기업 100개 육성</b><br/>         ◇ [대책 의의] <b>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최초로 수립·발표</b></p> <p>◇ <b>대책의 핵심 포인트</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fce4d6;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 20%;"> <b>① AI 내재화<br/>+<br/>공급산업<br/>육성</b>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 핵심설비에 AI 솔루션 적용하는 <b>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b><br/>⇒ <b>AI 내재화 가속 + 글로벌 수준의 AI 솔루션 확보</b></li> <li>② 산업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는 <b>국가 선도사업</b>으로 지정<br/>⇒ 프로젝트 상용화까지 R&amp;D, 자금, 인력 등 <b>전주기 종합 지원</b></li> <li>③ 수요기업의 <b>AI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3종 세트</b> 개발<br/>(데이터 전처리, 디지털트윈, Low코드·No코드)</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1bee7;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b>② 수요기업<br/>AI 활용<br/>역량 강화</b>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잠재 역량 갖춘 <b>수요기업 타겟팅 (중견 500개, 중소기업 500개)</b><br/>⇒ <b>맞춤형 컨설팅, AI 활용 기반 구축</b>(데이터플랫폼, IoT시스템)</li> <li>② <b>AI 비전공 인력</b>(대학생·구직자·재직자) 대상 <b>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설</b><br/>⇒ <b>AI 융합인력 단기 압축 양성</b>(’23년 100명, ’24년부터 연 400명)</li> <li>③ 중소기업 DX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br/><b>4,000억원 규모 산업 디지털 혁신펀드 조성·운영(~’24)</b></li> </ul> </td> </tr> </table> | <b>① AI 내재화<br/>+<br/>공급산업<br/>육성</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 핵심설비에 AI 솔루션 적용하는 <b>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b><br/>⇒ <b>AI 내재화 가속 + 글로벌 수준의 AI 솔루션 확보</b></li> <li>② 산업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는 <b>국가 선도사업</b>으로 지정<br/>⇒ 프로젝트 상용화까지 R&amp;D, 자금, 인력 등 <b>전주기 종합 지원</b></li> <li>③ 수요기업의 <b>AI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3종 세트</b> 개발<br/>(데이터 전처리, 디지털트윈, Low코드·No코드)</li> </ul> | <b>② 수요기업<br/>AI 활용<br/>역량 강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잠재 역량 갖춘 <b>수요기업 타겟팅 (중견 500개, 중소기업 500개)</b><br/>⇒ <b>맞춤형 컨설팅, AI 활용 기반 구축</b>(데이터플랫폼, IoT시스템)</li> <li>② <b>AI 비전공 인력</b>(대학생·구직자·재직자) 대상 <b>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설</b><br/>⇒ <b>AI 융합인력 단기 압축 양성</b>(’23년 100명, ’24년부터 연 400명)</li> <li>③ 중소기업 DX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br/><b>4,000억원 규모 산업 디지털 혁신펀드 조성·운영(~’24)</b></li> </ul> | 2023-01-13 |
| <b>① AI 내재화<br/>+<br/>공급산업<br/>육성</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 핵심설비에 AI 솔루션 적용하는 <b>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b><br/>⇒ <b>AI 내재화 가속 + 글로벌 수준의 AI 솔루션 확보</b></li> <li>② 산업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는 <b>국가 선도사업</b>으로 지정<br/>⇒ 프로젝트 상용화까지 R&amp;D, 자금, 인력 등 <b>전주기 종합 지원</b></li> <li>③ 수요기업의 <b>AI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3종 세트</b> 개발<br/>(데이터 전처리, 디지털트윈, Low코드·No코드)</li> </ul>  |                                       |   |                                   |   |            |
| <b>② 수요기업<br/>AI 활용<br/>역량 강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잠재 역량 갖춘 <b>수요기업 타겟팅 (중견 500개, 중소기업 500개)</b><br/>⇒ <b>맞춤형 컨설팅, AI 활용 기반 구축</b>(데이터플랫폼, IoT시스템)</li> <li>② <b>AI 비전공 인력</b>(대학생·구직자·재직자) 대상 <b>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설</b><br/>⇒ <b>AI 융합인력 단기 압축 양성</b>(’23년 100명, ’24년부터 연 400명)</li> <li>③ 중소기업 DX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br/><b>4,000억원 규모 산업 디지털 혁신펀드 조성·운영(~’24)</b></li> </ul>  |                                       |   |                                   |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③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컨설팅, 수요-공급 매칭, 해외 진출 등 DX 추진 기업 <b>One-Stop 밀착 지원</b> ⇨ <b>협업지원센터 지정('23년 2개소 추가)</b>, 지역 거점 확대(~'27년, 11개)</li> <li>② <b>제품 사용자 데이터(산업 마이데이터) 수집</b> → 관련 제조·서비스 업체 제공</li> <li>③ 이해관계자간 공정한 산업데이터 거래를 위한 <b>계약 가이드라인 제공</b></li> <li>④ <b>DX 방해 규제 14건 개선 이행</b>, 향후 선제적·지속적 규제 발굴 개선</li> </ul> </div> <p>◇ [추진 체계] ① 민간의 자발적 협업 구심점 <b>‘산업 AI 얼라이언스’</b> 결성<br/>         ② 정책 컨트롤타워로 민·관 <b>‘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b> 운영</p>   |            |
| 중소벤처기업부 | <p><b>• 2023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 사업, 올해부터 본격 시행</b></p> <p>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분야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 270개사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의 투자, 사업화 및 기술개발(R&amp;D) 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함</p> <p>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270개를 선정하면서 그 정책(프로젝트)을 본격 시행함</p> <p>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기술기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 시키고 세계적인(글로벌) 디지털·초격차 창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임</p> <p>이번 사업 공고는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절차로,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amp;D)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이나, 동 정책(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업력 10년 이하로 확대됨</p> | 2023-01-10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는 세계적인(글로벌) 추세(트렌드)와 기술, 시장 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5대 분야의 우수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를 일반공모 외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 (*24년부터는 10대 분야 모두 선정)</li> <li>* 5대 분야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li> </ul> <p>② <b>기저기술(딥테크) 팁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크며, 기존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0개사 선발</li> <li>- 기저기술(딥테크) 팁스의 총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기술개발(R&amp;D) 등 2,400억원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고 선발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향후 3년간 기술개발(R&amp;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 등</li> </ul> <p>③ <b>차세대 발사체 개발(290억원), 뇌과학 융합기술(68억원),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 71억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 착수</b></p> <p>④ <b>대형연구시설 사업 사전검토 체계 마련, 최고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 등 연구개발 절차 개선도 병행</b></p> <p>⑤ <b>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도 논의</b></p> |                   |
| <p>개인<br/>정보보호<br/>위원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3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b></li> </u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함</p> <p>위원회는 2023년 조사업무 기본 방향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역점 추진할 계획임</p> <p>또한, 지금까지의 유출·침해신고에 따른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예방적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p>   | <p>2023-01-11</p>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        |              |                     |                         |                             |                  |                |                      |                             |  |
|---|--|-----------------------------|------------------|----------------|----------------------|-----------------------------|--------|--------------|---------------------|-------------------------|-----------------------------|------------------|----------------|----------------------|-----------------------------|--|
|   |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을 중점 점검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li> </ul> </li> <li>-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가 어렵고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 점검</li> </ul> <p>② <b>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실시</li> </ul> <div data-bbox="365 909 1321 1126"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th>다크패턴</th> <th>애드레크</th> <th>API* 제공사업자</th> <th>비대면 플랫폼</th> <th>슈퍼앱</th> <th>스마트 기기</th> <th>대형수락사·솔루션제공사</th> </tr> </thead> <tbody> <tr> <td>탈퇴방해, 선택강요 등 눈속임 설계</td> <td>제3자쿠키대체 기술, 실시간 경매기술분석등</td> <td>통합로그인, 소셜로그인, 지도·위치정보 API 등</td> <td>교육, 화상회의, 협업도구 등</td> <td>한개 앱에 여러 서비스제공</td> <td>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 TV 등</td> <td>고객센터, 쇼핑물 솔루션, 전자서명기록 시스템 등</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규격</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최근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눈속임 설계를 선제적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10)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22.9)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 EDPB)(’22.3)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미디어) 대상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를 마련함</li> </ul> </li> </ul> <p>③ <b>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추진</li> </ul> | 다크패턴                        | 애드레크             | API* 제공사업자     | 비대면 플랫폼              | 슈퍼앱                         | 스마트 기기 | 대형수락사·솔루션제공사 | 탈퇴방해, 선택강요 등 눈속임 설계 | 제3자쿠키대체 기술, 실시간 경매기술분석등 | 통합로그인, 소셜로그인, 지도·위치정보 API 등 | 교육, 화상회의, 협업도구 등 | 한개 앱에 여러 서비스제공 |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 TV 등 | 고객센터, 쇼핑물 솔루션, 전자서명기록 시스템 등 |  |
| 다크패턴  | 애드레크   | API* 제공사업자                  | 비대면 플랫폼          | 슈퍼앱            | 스마트 기기               | 대형수락사·솔루션제공사                |        |              |                     |                         |                             |                  |                |                      |                             |  |
| 탈퇴방해, 선택강요 등 눈속임 설계                           | 제3자쿠키대체 기술, 실시간 경매기술분석등  | 통합로그인, 소셜로그인, 지도·위치정보 API 등 | 교육, 화상회의, 협업도구 등 | 한개 앱에 여러 서비스제공 |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 TV 등 | 고객센터, 쇼핑물 솔루션, 전자서명기록 시스템 등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br/>법제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b>」 발간</li> </ul> <p>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함</p> <p>이 보고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받아 수록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p>   | <p>2023-01-09</p>           |                  |                |                      |                             |        |              |                     |                         |                             |                  |                |                      |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국회<br>예산<br>정책처 | <p>• <b>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b></p> <p>제400회 정기회와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19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4건임</p> <p>국회는 심의대상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17건의 법률안을 2022년 12월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본 보고서는 2022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p> <p>이를 위해 먼저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함</p> | 2023-01-10 |

##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p>과학<br/>기술정보<br/>통신부</p> | <p>• <b>「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b><br/>(2023.1.12. 시행)</p> <p>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p> <p>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의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제15조의6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 대상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인증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청을 받은 기관은 보안인증 대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 보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안인증을 하도록 함</li> </ul>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수행 기관 및 보안인증 기준 평가기관의 지정 (제15조의10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4명 이상의 상시 근무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li> </ul> | <p>2023-01-10</p> |
|                            | <p>• <b>「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b><br/>(2023.1.12. 시행)</p> <p>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p>   | <p>2023-01-10</p>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대한 보안인증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0호, 2023. 1. 10. 공포, 2023. 1. 12. 시행)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제4조 제정)</p>  |            |
| 환경부   | <p>• <b>「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10. 시행)</b></p> <p>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b>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 정하고,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4조 등)</b></p> <p>*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br/> ** 재활용의무생산자: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p> | 2023-01-10 |
| 국토교통부 | <p>•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0. 시행)</b></p> <p>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제공되는 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8조의4)</p> <p>*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p>  | 2023-01-10 |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p>기획재정부</p>   | <p>• <b>「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최근 우리기업의 수주형태 변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연간 지원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지원규모의 3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개별 거래에 대해 대출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거래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보증 지원이 필요한 거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수주 관련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 (안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별제한 요건 적용을 배제(제2호)하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별제한 요건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 (안제3호)</li> </ul> <p>②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 (안 제1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br/>: 2023/1/9(월)~2/20(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a>로 제출</p> | <p>2023-01-09</p> |
| <p>산업통상자원부</p> | <p>• <b>「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 (안 별표3)</p>  | <p>2023-01-13</p>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p>-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br/>* ('23년) 13.0%, ('24년) 13.5%, ('25년) 14.0%, ('26년) 15.0%, ('27년) 17.0%, ('28년) 19.0%, ('29년) 21.5%, ('30년) 25.0%</p> <p>※ 의견 제시기간<br/>: 2023/1/13(금)~2/23(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a>로 제출</p>   |            |
| 중소벤처기업부 | <p>• <b>「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b></p> <p>「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공시 의무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하며,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 시,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를 허용하여 창투사와 신기사간 형평성 조절</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창업기획자가 의무공시하여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 내용 구체화 (안 제22조의2 신설)</b><br/>- 보육과정명·보육기간·보육과정 내용·보육대상자 규모 등 명시</p> <p>② <b>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출자 허용 (안 제17조제3호 신설)</b><br/>-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소유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함</p> <p>※ 의견 제시기간<br/>: 2023/1/13(금)~2/22(수)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a>로 제출</p> | 2023-01-13 |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 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p> <p>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제1항)</p>  | 2023-01-09 |
| 법제사법위원회 | <p>•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상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기업들은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만 이사회 결의만을 요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여 자회사를 신설함에 따라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물적분할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현물출자에 대한 일반주주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p> | 2023-01-09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정무<br>위원회 | <p>• <b>「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p> <p>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 열람할 수 있음</p> <p>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p> <p>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p> | 2023-01-09 |
|           | <p>• <b>「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p>   | 2023-01-09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br>일자   |
|-------------|--|------------|
|             | <p>• <b>「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b></p> <p>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하였음</p> <p>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임.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동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p> | 2023-01-11 |
| 기획재정<br>위원회 |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해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p> <p>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p> <p>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36조제3항)</p>     | 2023-01-1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br>일자   |
|---------------------------|--|------------|
|                           | <p>• 「<b>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p> <p>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의2 신설)</p> | 2023-01-13 |
| 과학<br>기술정보<br>방송통신<br>위원회 |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b>」</p> <p>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p> <p>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p>   | 2023-01-1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행정안전위원회   | <p>• <b>「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p> <p>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p> <p>한편, 딥페이크 기술 여부에 관한 표기를 의무화했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일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임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라고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만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p> <p>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p> | 2023-01-0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 <b>「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등)</p>  | 2023-01-10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 <p>• <b>「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p>  | 2023-01-11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p>• <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9인)」</b></p> <p>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p> <p>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p> <p>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p> | 2023-01-11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br>일자   |
|-------------|---|------------|
| 환경노동<br>위원회 | <p>• <b>「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3인)」</b></p> <p>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p> <p>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p> <p>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 (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였음(21진정0587600)</p> <p>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안 제39조제1항)</p>   | 2023-01-09 |
|             | <p>• <b>「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p> <p>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p> <p>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76조의4 신설 등)</p> | 2023-01-13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br>일자   |
|-------------|--|------------|
|             | <p>•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p> <p>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p>  | 2023-01-09 |
| 국토교통<br>위원회 | <p>•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b></p> <p>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p> <p>엔진이 핵심 부품인 내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로서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함. 그런데,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p> <p>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2항)</p> | 2023-01-12 |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상임위   | 아래 【별첨1】 참조 |   |    |
| 국회사무처 | 1/16(월)     |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3호)」 발간<br>-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 소개 |    |
| 국회도서관 | 1/17(화)     | 「지방의정 뉴스레터」 제5호 발간<br>- 가덕신공항 건설                                  |    |
|       | 1/19(목)     | 「현안 외국에선?」 제51호 발간<br>-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
|       | 1/19(목)     | 국회도서관 웹진 제57호 발간  |    |
| 예산정책처 | 1/17(화)     |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    |
| 입법조사처 | 1/16(월)     | 「NARS 현안분석」 발간<br>-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    |
| 미래연구원 | 1/16(월)     | 「Futures Brief」 제23-01호 발간<br>-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    |

### [별첨1] 제402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 위원회 | 일시            | 구분    | 내용                         |
|-----|---------------|-------|----------------------------|
| 법사위 | 1/16(월) 10:00 | 전체회의  | - 법안 심사, 업무보고(법무부, 감사원 소관) |
| 정무위 | 1/16(월) 10:30 | 법안1소위 | - 법안 심사                    |
|     | 1/18(수) 10:00 | 법안2소위 | - 법안 심사                    |
| 법사위 | 1/17(화) 14:00 | 전체회의  | - 현안보고(외교부, 통일부 소관)        |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1/16(월)<br>10:00 |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br>및 대책모색 | 민병덕·이재정·강득구 의원실,<br>대한전기협회 등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1/16(월)<br>14:00 |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변재일·김영식 의원실,<br>미디어미래연구소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1/17(화)<br>10:00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r>제정 토론회 | 백혜련 의원실                      | 의원회관<br>2소회의실 |
| 1/17(화)<br>10:00 |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                       | 한준호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1/17(화)<br>13:30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 서삼석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1/17(화)<br>14:00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                     | 이달곤 의원실,<br>사단법인 서초포럼        | 입법조사처<br>대회의실 |
| 1/18(수)<br>14:00 |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 변재일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1/18(수)<br>14:00 |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br>연속토론회   | 김성주 의원실,<br>민주연구원            | 의원회관<br>9간담회실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입법조사처 | 1/11<br>(수)14:00 |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대행 제도개선」<br>세미나 개최           | 의원회관<br>제1소회의실 |
| 미래연구원 | 1/9(월)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 발간<br>-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                |

### <국회의원실>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1/9<br>(월)13:00  | <u>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u>  | 박성민·송재호·박수영<br>의원실, (사)균형성장혁신   | 의원회관<br>1소회의실 |
| 1/10<br>(화)10:00 | <u>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u>   | 조경태 의원실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 1/10<br>(화)10:00 | <u>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4차</u><br>-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 남인순·양금희·박광온·<br>최연숙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8간담회실 |
| 1/11<br>(수)10:00 | <u>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br/>상법 개정 토론회</u>                           | 박주민·이용우 의원실, 경<br>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